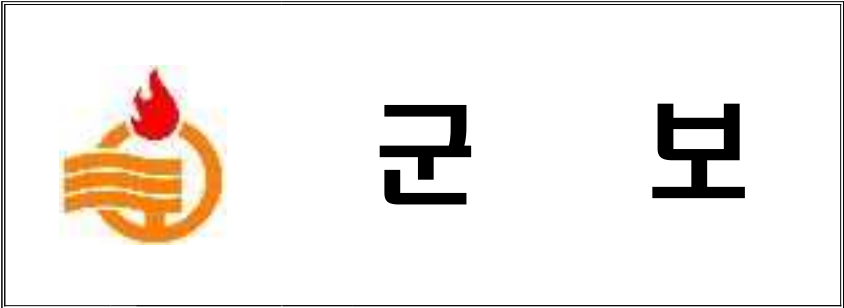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425호

2026년 7월 24일(금)

- 차 례 -

입 법 예 고

제2026-26호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2026-2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 - 20 조례안 입법예고

공 고

제2026-1127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양도면 도장1리~문고개 일원 보행환경 - 31 개선공사)
-------------	---

입법예고

강화군의회 공고 제 2026 - 26 호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강 화 군 의 회 의 장**1. 제안이유**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단 임무 정비 및 소집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 ~ 제8조)

나.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다. 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56,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서식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해당 조항	의견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가입자격) ① 강화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단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가입자격과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면 자율방재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방재단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④ 읍·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원 중 1명을 읍·면 부대표로 지명하고, 지명된 읍·면 부대표는 읍·면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

축(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와 방재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단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2.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경보 전달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해복구 지원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은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읍·면 대표의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정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수 경비(운임, 식비, 일비, 유류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0조(출입증)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재해보상) ①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를 따른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할 수 있다.

1. 요양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로 인해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유족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자필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지명·선출된 단장, 단원,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 등은 이 조례

에 의해 각각 임명·위촉·지명·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강화군 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남 / 여	연령		혈액형	
주 소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년 ○○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활 동 희망내용					
[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 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강화군 자율방재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강화군 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보유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여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활 동 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 명부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강화군 자율방재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가입희망 회원 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확인 서명
1							
2							
3							
4							
⋮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활동 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도보, 차량, ○개조 교대 등 활동 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 ○○분)			
	장 소	※ ○○읍·면 일원, 도로명 주소, 지번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 유도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확인자 : ○○○읍(면) 대표 성 명 (인)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활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강화군 자율방재단장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연번	성명	활동상황		특이사항
			횟수	시간	
	1				
	2				
	3				
	⋮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강 화 군 수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강화군 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시기, 활동 개요, 행사 개요 등을 월별로 작성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강 화 군 수 귀하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사 진 (3×4cm)
강화군 자율방재단

← 5.5cm →

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u>○ ○ ○</u>
생년월일 : <u> . . . (남/여)</u>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강화군수 (직인)
<u>바탕 배경에 강화군 상징(휘장) 삽입</u>

↑
7.7 cm
↓

■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례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강화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 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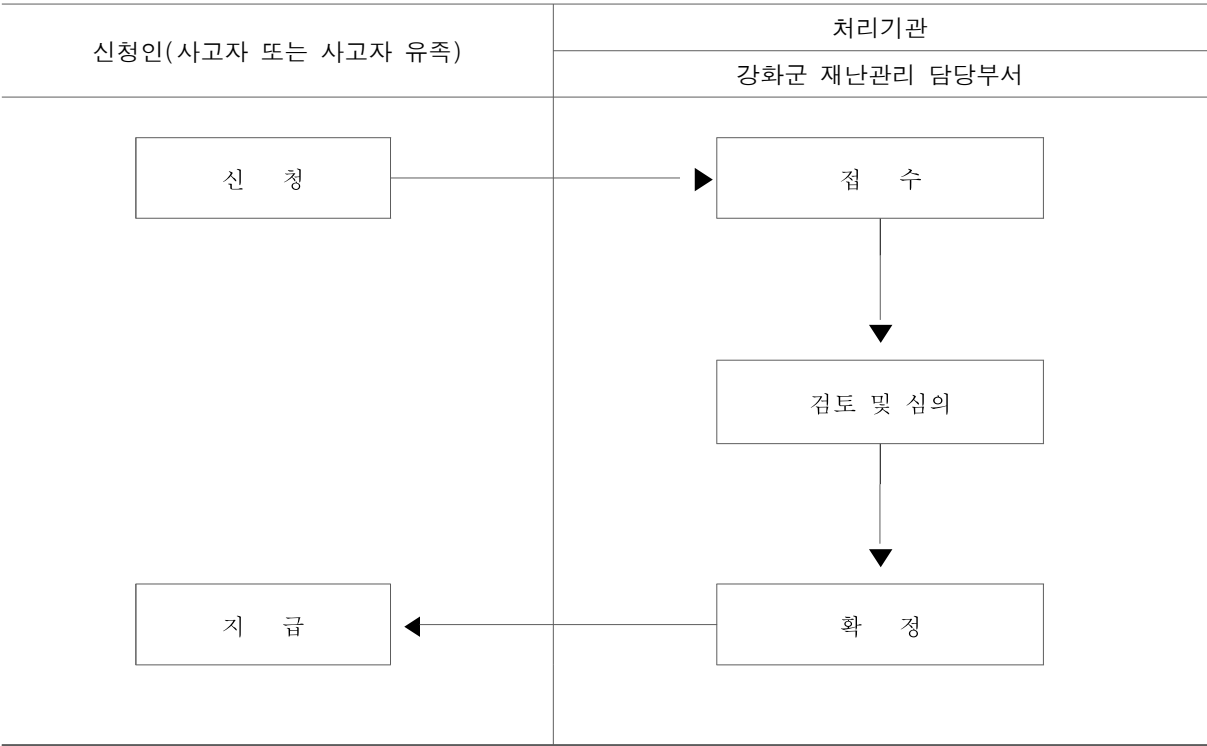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강화군의회 공고 제 2026 - 27 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강 화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정부 조직 개편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0조)
-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56,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서식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해당 조항	의견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5조(「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6조(「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0조(「강화군 건축 조례」의 개정)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를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경비”를 “사용료”로 하고, 후단의 “경비”를 “사용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제1조(「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u>기획재정부</u> 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u>기획재정부</u> 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u>기획재정부</u>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 <u>기획예산처</u> 장관----- ----- <u>기획예산처</u> <u>장관</u> ----- ----- <u>기획예산처</u> 장관--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 제2조(「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u>기획재정부</u> 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u>기획재정부</u> 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u>기획재정부</u>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8. ----- <u>기획예산처</u> 장관----- ----- <u>기획예산처</u> <u>장관</u> ----- ----- <u>기획예산처</u> 장관-- -----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생략)	-----. 9. (현행과 같음)

□ 제3조(「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생략) 2.·3. (생략) ②·③ (생략)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 ----- ----- -----. 1. ----- ----- -----. 가. ----- ----- -- <u>재정경제부장관</u> ----- ----- ----- 나. ~ 사.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4조(「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당소 지원) ① (생략) ② 운영비는 <u>여성가족부</u> ,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당소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성평등가족부</u> ----- ----- -----.

□ 제5조(「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u>여성가족부</u> 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준용) ----- ----- ----- ----- <u>성평등가족부</u> ----- ----- -----.

□ 제6조(「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u>환경부장관</u> 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7조(「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② (생략) ③ 종량제 봉투는 <u>환경부가</u>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과 용도는 별표 3과 같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다.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국비 및 시비 지원 대상) 국비 및 시비 지원 대상 이전 기업에게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비 및 시비 지원 대상)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 제9조(「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신청) ① (생략) ②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장, <u>실장·담당관·과장</u> ,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읍장·면장, 강화군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강화군의회 2. (생략)	제7조(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u>담당관·과장</u> ----- ----- ----- ----- 2. (현행과 같음)

□ 제10조(「강화군 건축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지의 조경) ①·② (생략)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대지의 조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하고 해당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 5. (생략)

④ (생략)

-----.

1. -----
----- 산업통상부장관 -----

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u>	<u>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u>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사용료)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u>경비</u> 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	3.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 ----- <u>사용료</u> ----- ----- ----- <u>사용료</u> ----- -----

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

4.5.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공 고

강화군 공고 제2026 - 11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양도면 도장1리~문고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액이 결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 통지 하였으나, 일부 토지 등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강 화 군 수

1. 사 업 명 : 양도면 도장1리 ~ 문고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강화군수
3. 공고기간 : 2026. 7. 22. ~ 2026. 8. 5.
4. 공시송달 대상자 : “목록 별첨”
5.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 나. 협의장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도로교통시설팀(☎032-930-3739)
 - 다. 협의방법 : 토지 소유자 개별 방문 협의

라. 보상시기 및 방법 : 협의(계약체결) 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거래은행 통장사본 1통

6. 기타 공지사항

가.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도로교통시설팀(☎032-930-373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내역								
연 번	토지소 재지	공부면적	편입토지 소재지	편입 면적	지목	지분	성명	주소
1	양도면 도장리 91-1	2,975m ²	양도면 도장리 91-5	121	답	1/2	유*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동 ****호